

4단계 BK21 「미래국방 지능형ICT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정 2020. 10.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충남대학교 「미래국방 지능형ICT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연구단의 구성)

- ①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이하 ‘BK21 Four’ 이라 한다)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충남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전자공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연구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업단전문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조직)

- ① 교육연구단의 단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 Four사업공모에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BK21 Four 사업 교육연구단장 변경처리기준』을 따른다.
- ②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 교육연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산학연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ICT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교육연구단장)

-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의 수행 총괄.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총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연구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 ③ 교육연구단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기획팀장, 교육팀장, 연구팀장 총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단의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참여인력

제6조(참여교수)

- ① 사업단의 참여교수 추가 및 교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체 참여교수에게 공지한다.
- ② 참여교수의 추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별표1] 연구실 실적평가 점수표 기준으로 1000점 이상)
- ③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아래 1 호의 경우 1 년의 유예기간 후 교체한다.
 1. 전년도 실적이 저조한 경우 ([별표1] 연구실 실적평가 점수표 기준으로 500점 이하)
 2. 정년퇴임 및 기타 건강 이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7조(참여대학원생)

-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
 2. 박사: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 수료후연구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통합과정: 입학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
※ 휴학기간, 군복무기간은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
- ② 교육연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의 구성, 배정,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연구 장학금(A)은 학생 수 배정액(B)과 실적 배정액(C)으로 구성하며,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실적 배정액 비율(C/A)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사업단 연구 장학금(A)은 각 연구실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개별 연구실 연구 장학금(A*)은 연구실 학생 수 배정액(B*)과 연구실 실적 배정액(C*)으로 구성된다.
 3. 연구실 학생 수 배정액(B*)은 전체 사업단의 가중치 대학원생 수 대비 개별 연구실의

가중치 대학원생 수에 따라 배분되며,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B^* = B \times (\text{연구실의 가중치 대학원생 수}) / (\text{전체 사업단의 가중치 대학원생 수})$$

4. 대학원생 가중치는 한국연구재단 기준을 따라 석사(0.7), 박사(1.3), 박사수료(1.0)로 정하며,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5. 대학원생은 4월 1일, 10월 1일 이후 전일제 검증을 통하여 최종 확인한다.
 6. 연구실 실적 배정액(C*)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별표1]에 따라 결정되며,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C^* = C \times (\text{연구실의 실적 점수}) / (\text{전체 사업단의 실적 점수})$$
 7. 연구실 연구 장학금(A*)은 연구실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된다.
 8. 연구실 연구 장학금(A*)은 [별표1]의 학생실적 평가표를 기준으로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9. 연구실 연구 장학금(A*)은 직전 1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1월 산정되며, 2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집행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의무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부적격한 경우에는 연구장학금 지급 중단 및 앞으로의 BK21 Four 사업에서 참여 제외 될 수 있다.

제8조(참여신진연구인력)

-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 지침을 준용하며 신진연구인력 선발과 연도별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최소 1건 이상 SCI(E) 논문을 주저자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과 보상제도

제9조(성과급)

-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사업비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참여신진연구인력, 사업단전문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참여교수 성과급은 실적 기여와 운영 기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③ 참여신진연구인력 성과급은 실적 기여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다.
- ④ 참여대학원생 성과급은 실적 기여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다.
- ⑤ 사업단전문직원 성과급은 운영 기여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다.
- ⑥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4장 보수제도

제10조(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 사업단전문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5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국제협력사업

제11조(국제 협력 지원)

- 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업단은 해외연수지원, 해외석학초빙, 해외연구자교류, 국제학술회의 발표 등 국제화 활동을 지원한다.
- ② [별첨1]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 ③ 국제화 활동 종료 후 최종 대상자는 활동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가진다.

제6장 기 타

제12조(자체평가)

- ① 교육연구단에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며, 주기적으로 운영한다.
- ② 전체교수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 ③ 전체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교육연구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2. 사업팀, 참여 교수 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단평가를 담당.
- ④ 교육연구단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 및 전체교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 현황, 사업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에 배정되는 BK21 Four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세부사항)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에서 이미 집행한 BK21 Four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산정 기준

[별표2] 참여인력 성과급 지급 기준

[별첨1] 교육연구단 운영 서식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별표1]>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산정 기준

- ① 실적 산정 방식: 4단계 BK21 사업의 실적산정 방식에 따라 매년 1월 산정
- ② 실적 인정 기간: 직전 1년 실적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③ [표 1-1] 연구실 실적평가 점수표를 활용하여 연구실 실적 배정액을 결정함
- ④ [표 1-2] 연구실 실적인증기준에 부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함
- ⑤ [표 1-3] 참여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표를 활용하여 연구실 별 지원 대학원생을 선별함

[표 1-1] 연구실 실적평가 점수표

영역	평가항목		활용	점수
교육	학생 해외연수 과건	장기 (15일 이상)	교육 국제화	800
		중기 (15일 이내)		400
	저서 출판		표 2-8	400
	온라인 오픈 코스		표 2-8	300
	교육 관련 수상		표 2-8	300
	영어 강의		교육 국제화	100
연구	학술지 논문	SCI(E)-1: IF 10이상 or JCR 상위 5% 이내	표 2-4 표 3-3	1200
		SCI(E)-2: IF 5이상 or CS분야 우수학술대회 IF 4이상 or JCR 상위 10% 이내		800
		SCI(E)-3: IF 3이상 or CS분야 우수학술대회 IF 2이상 or JCR 상위 15% 이내		600
		SCI(E)-4:이 외 SCI(E)		400
		SCOPUS		200
		연구재단등재(후보)지		150
	학회 발표	국제	표 2-7	100
		국내		20
	특허	국제 특허 등록	표 3-4	1000
		국내 특허 등록		200
	연구 과제 수주	국제	표 3-1	연구비/10만원
		국내		연구비/20만원
	기술이전		표 3-4	이전비/1만원
	국제화	국제 학술지 활동	Editor-in-Chief	연구 국제화
Associate Editor/Editorial Board Member			500	
Guest Editor			300	
국제 학술대회 활동		General Chair / TPC	연구 국제화	1000
	Program Chair	400		

		Session Chair	연구 국제화	50
		Plenary Talk		500
		Tutorial Speaker		300
	해외 연구자 상호 교류	협약 체결	연구 국제화	500
		단순 교류		100
	국제 공동 연구		표 3-6	200
	외국어 학위 논문 지도		표 2-9	200
학생 국제 공동 연구		교육 국제화	200	

[표 1-2] 연구실 실적인증기준

영역	평가항목	실적인증기준	증빙자료
교육	학생 해외연수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파견일 기준 - 장기 15일 이상 중기 15일 이내 - 단순 국제학술대회 참석은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증빙
	저서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사본 • ISBN
	온라인 오픈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오픈 코스 개설일 - 온라인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URL • 강의 계획서
	교육 관련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사본
	영어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강의 설강일 - 종합정보시스템 영어강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확인
연구	학술지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 게재일 - 연구실 논문 1편당 1건의 실적 인정 - BK지원 신진연구인력의 논문은 제외 - 국내 학술지는 참여대학원생이 포함된 실적만 인정 • 공동 논문 기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참여 교수가 공동 논문을 작성한 경우는 교신저자가 인정한 기여율을 기준으로 배분함 - 사업단 참여인력이 주저자에 미포함 시 참여인력수/총저자수 비율만 인정 • 국제 학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시 SCI(E)급으로 인정된 저널에 게재된 실적 - 연구재단 인정 우수국제학술대회 목록에 해당하는 발표 실적은 학술지 논문으로 인정함 • 국내 학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 목차 사본 • 논문 사본
	학회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시작일 - 참여대학원생이 포함된 실적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사본 • 목차 사본 • 논문 사본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등록일 - 사업단 참여인력이 발명자인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증
	연구과제 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연구비 입금일 • 공동 연구 - 연구책임자가 인정한 연구비 기여율을 기준으로 합 - 기여율 미 제출 시 (n=전체 연구자 수) 연구책임자: 1/(n+1)×2, 공동연구자: 1/(n+1) • 국제 공동 연구 - 국제 공동연구 연구비는 국내 연구 대비 2배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입금 내역 • 연구비 기여율 (공동연구)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산학 협력단 입금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입금 내역
국제화	국제 학술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활동 시 SCI(E)급으로 인정한 학술지 활동 기간 • 기타 - Editor-in-Chief, Associate Editor, Editor Board Member, Guest Editor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역 증빙
	국제 학술대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국제학술대회 활동 기간 • 기타 - General Chair, (Technical) Program Chair, Session Chair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대회 활동 - Plenary Talk, Tutorial Speaker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대회 활동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역 증빙
	해외 연구자 상호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해외 연구자의 참여교수 방문 일정 - 참여 교수의 해외 연구자 방문 일정 - MOU 체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역 증빙 • 협약서
	국제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참여교수와 외국기관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SCI(E) 논문 - 참여교수와 외국기관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특허 • 기타 - 연구 분야 항목과 중복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사본 • 목차 사본 • 논문 사본 • 특허증
	학생 국제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참여대학원생과 외국기관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SCI(E) 논문 및 연구재단이전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 - 참여대학원생과 외국기관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특허 • 기타 - 연구 분야 항목과 중복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사본 • 목차 사본 • 논문 사본 • 특허증
	외국어 학위 논문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참여교수의 지도 대학원생의 외국어 학위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확인

[표 1-3] 참여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표

영역	평가항목		활용	점수
연구	학술지 논문	SCI(E)-1: IF 10이상 or JCR 상위 5% 이내	표 2-4 표 3-3	1200
		SCI(E)-2: IF 5이상 or CS분야 우수학술대회 IF 4이상 or JCR 상위 10% 이내		800
		SCI(E)-3: IF 3이상 or CS분야 우수학술대회 IF 2이상 or JCR 상위 15% 이내		600
		SCI(E)-4:이 외 SCI(E)		400
		SCOPUS	표 2-5	200
		연구재단등재(후보)지		150
	학회 발표	국제	표 2-6	100
		국내		20
	특허	국제 특허 등록	표 2-7	1000
		국내 특허 등록		200
	수상	국제		200
		국내		40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별표2]>

참여인력 성과급 지급 기준

- ① 성과급은 참여교수, 참여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사업단전문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실적 산정 방식: 4단계 BK21 사업의 실적산정 방식에 따라 매년 점수를 산정
- ③ 실적 인정 기간: 직전 1년 실적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④지급일: 매년 2월
- ⑤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아래 호와 같다.
 1. 참여교수 성과급(A)은 실적기여 배정액(B)과 운영기여 배정액(C)으로 구성되며,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참여교수 성과급(A)과 실적기여 배정액 비율(B/A)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참여교수 성과급(A*)은 참여교수 별 실적기여 배정액(B*)과 운영기여 배정액(C*)으로 구성된다.
 3. 참여교수 실적기여 배정액(B*)은 [별표1]의 연구실 실적평가 점수표에 따라 산정되며,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B^* = B \times (\text{연구실 실적평가 점수}) / (\text{전체 사업단 실적평가 점수})$$
 4. 참여교수 운영기여 배정액(C*)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육연구단장, 기획팀장, 교육팀장, 연구팀장에게 지급한다.
- ⑥ 참여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아래 호와 같다.
 1. 참여신진연구인력 성과급(A)은 실적기여 배정액(B)으로 구성되며, 참여신진연구인력 성과급(A)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참여신진연구인력 성과급(A*)는 참여신진연구인력 별 실적기여 배정액(B*)로 구성된다.
 3. 참여신진연구인력 실적기여 배정액(B*)은 [별표1]의 연구실 실적평가 점수표에 따라 산정되며,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B^* = B \times (\text{참여신진연구인력 실적평가 점수}) / (\text{전체 참여신진연구인력 실적평가 점수})$$
- ⑦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아래 호와 같다.
 1. 참여대학원생 성과급(A)은 실적기여 배정액(B)으로 구성되며, 참여대학원생 성과급(A)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참여대학원생 성과급(A*)은 참여대학원생 별 실적기여 배정액(B*)으로 구성된다.
 3. 참여대학원생 실적기여 배정액(B*)은 [별표1]의 참여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표에 따라 산정되며,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B^* = B \times (\text{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 / (\text{전체 참여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
- ⑧ 사업단전문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아래 호와 같다.
 1. 사업단전문직원 성과급(A)은 [별첨1] 계약직원 근무 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지급되며, 사업단전문직원 성과급(A)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